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콘텐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대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먼저, 경쟁입찰(일반 · 제한 · 지명)과 수의계약 등 절차, 입찰공고 · 참가자격 · 낙찰자 결정 등 입찰 과정과 계약체결의 요건, 계약이행 단계의 주요 의무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대가지급, 지체상금, 하자담보책임, 계약금액 조정, 계약의 해제 등 계약관계 변동 및 분쟁 해결에 대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함께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1
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알아보기 4
1.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이해하기 4
1.1.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과 계약방법 4
1.1.2. 그 밖의 공사계약 방법 6
2.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10
2.1. 경쟁입찰방법 10
2.1.1. 일반입찰 10
2.1.2. 제한입찰 10
2.1.3. 지명입찰 13
2.2. 입찰 및 낙찰절차 14
2.2.1. 입찰공고 및 입찰참가통지 14
2.2.2.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 18
2.2.3. 입찰방법 21
2.2.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25
2.2.5. 낙찰절차 27
2.3. 대형공사계약 29
2.3.1. 대형공사계약의 입찰 29
2.3.2. 대안입찰 32
2.3.3. 일괄입찰 34
2.4.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37
2.4.1. 기술제안입찰 37
3. 수의계약 41
3.1. 수의계약의 대상 및 자격 41
3.1.1. 수의계약 대상 및 대상자 결정 41
3.1.2.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및 제한 43
4. 계약의 체결과 이행 46
4.1. 계약의 체결 46
4.1.1.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46
4.1.2. 계약의 이행 보증 등 47
4.1.3. 하자의 담보 49
4.2. 계약의 이행 51
4.2.1. 선금급 및 대가지급 51
4.2.2. 계약금액의 조정 53
4.2.3. 하자보수 58
4.3.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59
4.3.1. 계약의 이행지체 59
4.3.2. 계약의 해제·해지 60
5. 이의신청 62
5.1. 이의신청 제기 62
5.1.1.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62

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알아보기

1.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이해하기

1.1.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과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이란?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2026년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제1장 제1절 참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다음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적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2조 참조).

-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시, 군, 구
-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교육청

공사의 종류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에서 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건설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전기공사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해체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소방시설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나목)
국가유산수리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등(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손상방지를 위한 조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그 밖의 공사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과 국가 공사계약의 비교

구분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국가 공사계약
계약당사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국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민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분쟁발생 시 조정기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방법

경쟁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 입찰 절차

입찰 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현장설명
						↓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	개찰	←	입찰참가신청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유형별 절차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전자공개수의계약 안내공고	-
↓	
견적서 제출	견적서 제출
↓	↓
계약상대자 선정	가격조정
↓	↓
계약체결	계약체결
↓	↓
계약이행	계약이행
↓	↓
이행완료 및 대가 청구	이행완료 및 대가 청구
↓	↓
대가지급	대가지급

※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콘텐츠

콘텐츠명	콘텐츠 바로가기
국가 공사계약자	바로가기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바로가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	바로가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바로가기

1.1.2. 그 밖의 공사계약 방법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의 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계약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체결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 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단가계약

단가계약의 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시설물의 보수·복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개산계약

개산계약의 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다음의 공사 등을 대상으로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 도로공사
-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護岸) 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등을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 위에 따른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해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따라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2항).

종합계약

종합계약의 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려는 공사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공동계약

공동계약의 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되,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4항).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에 따른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다만,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함)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으로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 다만,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 위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5항).

2.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2.1. 경쟁입찰방법

2.1.1. 일반입찰

일반입찰의 원칙

일반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일반입찰 참가자격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위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현장설명 참가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2.1.2. 제한입찰

제한입찰 대상

제한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

▪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7호).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제한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추정가격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호) 미만인 공사계약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150억원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0억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는 공사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그 제한기준

중복제한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각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7항 본문).

▪ 다만, 위 3.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 2.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7항 단서)

입찰공고 시 제한사항 등의 명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제한사항별 제한기준

공사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기준

▪ 공사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구분	제한기준
공사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함)	① 공사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른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음)
	② 공사실적금액에 따른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함)의 1배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정하는 금액
시공능력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제한기준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인접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 시·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새로운 시·도가 설치(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과 새로 설치된 시·도의 관할구역을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새로운 시·도의 관할구역을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으로 분리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인접 시·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도까지를 포함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공사의 성질·규모에 따른 제한기준

▪ 시·도지사는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하여 입찰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입찰 시마다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 내용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 이 경우에는 공사의 실적 및 시공능력(「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8항).

2.1.3. 지명입찰

지명입찰 대상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호·제2호·제5호·제7호·제9호).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는 경우
3. 위 1. 및 2.의 경우 외의 공사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 시설물의 보수·복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를 위해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명입찰대상자 지명 및 지명기준

입찰대상자의 지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본문).

▪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단서).

입찰대상자 지명기준

▪ 위에 따라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호).

-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을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할 것
-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2호)의 자를 지명할 것
- 단가계약의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 포함)한 자를 지명할 것

2.2. 입찰 및 낙찰절차

2.2.1. 입찰공고 및 입찰참가통지

입찰공고

입찰공고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제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1호가목).
  -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단서).

입찰공고의 시기

- 입찰공고의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제3항).

구분	공고 시기	
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전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금액 미만인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
	추정가격이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의 2. 또는 3.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찰공고의 내용

▪ 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입찰공고 내용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포함)
-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6항에 따른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사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비율
- 그 밖에 입찰에 관해 필요한 사항

공고취소 및 정정공고

▪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본문).

▪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단서).

공사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를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교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 설계서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
- 입찰유의서
-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3에 따른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 입찰안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의 경우)
-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입찰참가 통지

일반입찰 참가자격 통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입찰참가통지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로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 내용을 통지해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전단).

- 이 경우 통지시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준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후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통지서로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의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전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준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후단).

▪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입찰 시마다 입찰참가통지서로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의 내용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위에 따른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지명입찰 참가자격 통지

▪ 지명입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경우에는 입찰참가통지서로 입찰공고의 내용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전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6조제1항).

▹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준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후단).

▪ 위에 따른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26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각 입찰대상자에게 참가자격을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2.2.2.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

입찰참가자격

입찰의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일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입찰참가자격 적격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의3제1호·제3호).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 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본문).

> ※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장설명 참가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본문).

-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 ※ **입찰 참가자격 등록**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 · 공사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 및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함)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등록을 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해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
>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 ·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함)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본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절차(『2026년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제6장, 제5절 부정당업자 제한 제도 참조)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발생	▶	사전통지	▶	청문실시	▶	계약심의위원회 상정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		▶	이의신청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해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
> Q.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지만 사업의 특성상 입찰에 꼭 참가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 A. 부정당업자는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각 구분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

1.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② 국내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③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④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⑤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서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함)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항)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및 위반행위를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통보가 된 계약상대자가 마지막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가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2항).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2.3. 입찰방법

입찰 참가신청

입찰의 참가신청 서류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

- 입찰 참가신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위의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단서).

▪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사실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제출한 위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입찰 참가신청증 발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입찰참가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

-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본문).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

▪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로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1인 1통 제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에 확인인을 찍고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산출내역서 첨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함)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 본문).

▹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 단서).

▪ 산출내역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

구분	작성방법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된 공사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적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되,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한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되지 않은 공사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기에 단가를 적음	

입찰서 교환·변경 및 취소 금지

▪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본문).

▹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9. 라.).

장기계속공사 및 단가계약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입찰

▪ 장기계속공사(「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공사를 포함함)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8항).

> ※ "장기계속공사"란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단가계약공사의 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설물의 보수·복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항).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함)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입찰보증금 귀속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 다만,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단서).

입찰보증금 반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납부된 입찰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6. 다.).

2.2.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입찰의 성립

입찰 성립조건

▪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방법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 위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공사계약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입찰무효 사유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4.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 입찰
5.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함)
6.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함)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다만,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 및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4. 위에서 정한 입찰 외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단서).

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밝히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본문).

▪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단서).

2.2.5. 낙찰절차

개찰

개찰 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해야 하며,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본문).

▹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단서).

낙찰자 결정 방법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

▹ 이 경우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 ※ 위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 위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

> ※ 위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6장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3항).

> ※ 위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함)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7. 마. 3) 및 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이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반영하여 ①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② 입찰금액이 낮은 자, ③ 추첨의 순으로 낙찰자 결정

낙찰선언

낙찰선언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2.3. 대형공사계약

2.3.1. 대형공사계약의 입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대형공사"란?

▪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특정공사"란?

▪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2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입찰방법 심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대형공사등"이라 함)의 경우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5항).

-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전문성이 필요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 해당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물의가 발생하거나 공정성에 시비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정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하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않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위 1.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2항).

※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

※ "대안입찰"이란 원안 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해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정함)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함]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2제1항).

▪ 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2제2항 본문).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2제2항 단서).

> ※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갖춰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하고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2제3항).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입찰참여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

설계비 일부 보상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 대안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 ※ 설계보상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0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2.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에 따릅니다.

입찰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계약금액 증액 제한

▪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 일괄입찰 시 기본설계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항).

-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 위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3항).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위 1.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위 1.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위 1.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2.3.2. 대안입찰

대안 및 대안입찰

"대안"이란?

▪ "대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해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정함)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

"대안입찰"이란?

▪ "대안입찰"이란 원안 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

> ※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면 및 서류 포함)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8호).

대안입찰 입찰절차

대안입찰 시 도서 첨부

▪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해야 하고,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

-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 원안입찰과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과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설계적격여부 심사 및 설계점수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설계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 전단 및 제4항제1호).

-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는 제외함) 및 설계점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 후단).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위에 따라 설계의 심의를 할 때 대안입찰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6항)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대안채택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함)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 적격 입찰로 선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1항).

-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代案工種)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말함)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2항 본문).

▪ 다만, 여러 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채택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2항 단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위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으며,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4항).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 및 제99조제5항).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7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대안채택된 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3항).

대안제출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6항).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2. 위 1. 외의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

> ※ 위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3. 일괄입찰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입찰

"일괄입찰"이란?

▪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함)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

> ※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면 및 서류 포함)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8호).

"기본설계입찰"이란?

▪ “기본설계입찰”이란 공사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6호).

일괄입찰 입찰절차

실시설계서 제출

▪ 일괄입찰을 할 때에는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

일괄입찰 시 도서 첨부

▪ 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항).

-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그 밖에 공고 시 요구한 사항
- 실시설계서의 경우: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설계적격여부 심사 및 설계점수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의뢰해야 하며,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는 제외함) 및 설계점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제2호·제3호).

-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 일괄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위에 따라 설계의 심의를 할 때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6항)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기본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 위 4.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입찰 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3항).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서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함)을 선정한 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선택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 본문).

※ 다만,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 후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서 공사의 시급성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실시설계서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원래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7항).

낙찰자 결정 기한

▪ 일괄입찰의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4항).

※ 위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2.4.1.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이란?

기술제안입찰 적용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제1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8호).

※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工期短縮方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1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심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제1항).

-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제2항).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기술제안입찰의 입찰 참가자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정하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하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제97조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제1항).

-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 생애주기비용(生涯週期費用) 개선방안
- 공기단축방안
- 공사관리방안
- 설계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

-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제2항 전단).

- 위의 경우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제2항 후단).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제1항).

-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 공기단축방안
- 공사관리방안
-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의 도서(圖書)를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제2항).

-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 단가와 수량을 적은 산출내역서
-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해야 하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제3항).

-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함)을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제1항 및 제2항).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기술제안서 적격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함)을 선정한 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선택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본문).

- 다만,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단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함)을 선정한 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선택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제1항 본문).

- 다만,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제1항 단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제2항).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의2제1항).

- 기술제안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

3. 수의계약

3.1. 수의계약의 대상 및 자격

3.1.1. 수의계약 대상 및 대상자 결정

수의계약 대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수의계약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구 분	유 형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금액기준	•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이하 •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가목)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청년창업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재난복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함)와 계약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나목·다목·마목) •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라목)
	재공고입찰	• 재공고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전단) •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후단)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 위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분할수의계약

▪ 재공고입찰 및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 계속공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함)의 경우 그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본문).

수의계약대상자 결정

견적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

▹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6절 1. 나.).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4호).

수의계약대상자 결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함)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 ※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2.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및 제한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수의계약대상자 자격요건

▪ 수의계약대상자도 입찰참가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 입찰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수의계약 체결 제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제한을 받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 본문).

▹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 단서).

>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입찰 및 낙찰절차-입찰참가자격 및 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5항 본문).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2항 및 제31조제5항 단서).

신분관계에 따른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②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 1., 3. 및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 2., 4. 및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해야 하며,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4. 계약의 체결과 이행

4.1. 계약의 체결

4.1.1.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표준계약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적힌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서식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와 다른 계약서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계약서 작성의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성립

계약의 확정

▪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함)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당사자간 분쟁해결방법의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다음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제2항).

1.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 위 1.에 따른 조정을 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정한 계약당사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

4.1.2. 계약의 이행 보증 등

공사계약의 이행 보증

이행 보증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본문).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는 방법(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내는 방법을 말함)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 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함)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함]를 제출하는 방법[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함]

▪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2.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위 2.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

-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따른 공사계약
- 대형공사계약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에 따른 공사계약

> ※ 공사이행보증서
>
> -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낼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 납부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그 입찰보증금을 대체정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 1. 및 3.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적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

계약보증금의 귀속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

1.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관한 계약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장기계속계약에서 2차 이후의 공사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 후단)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1항).

▪ 위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3항).

공사 손해보험

손해보험 가입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 계약담당자는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 공사,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6절 2. 참조).

보험 가입 대상
① 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 공항, ③ 댐 축조, ④ 에너지저장시설, ⑤ 간척공사, ⑥ 준설, ⑦ 항만, ⑧ 철도, ⑨ 지하철, ⑩ 터널공사(다만,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 발전소, ⑫ 쓰레기소각로, ⑬ 폐수처리장, ⑭ 하수종말처리장, ⑮ 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 전시시설, ⑰ 송전공사, ⑱ 변전공사
다음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① 해상(海上), 하천(河川), 연약지반(軟弱地盤) 등 현장의 특성상 자연재해,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높은 공사 ②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공사 등 안전과 관련한 시공 기술상 주의가 요구되는 공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 밀집도, 유동인구,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3. 하자의 담보

계약의 담보책임

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부터다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1항 본문).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아래 2.의 공사는 제외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함): 1년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및 제70조제2항).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함)

하자 발생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계약상대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본문).

▪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함)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5항 및

제37조제2항).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4항).

▸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다음의 요건을 갖춘 동·리의 대표자와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시공능력이 있을 것

√ 동·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 포함)을 확보하고 있을 것

√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

하자보수보증금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5항·제38조제2항).

4.2. 계약의 이행

4.2.1. 선금급 및 대가지급

선금급의 지급

“선금급”이란?

▪ 공사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전에 「지방회계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참조).

선금급의 범위

▪ 공사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회계법」 제35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3호).

대가 지급 전 검사

검사의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
-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할 때에 실시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산정이 적정한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해야 하며,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

▪ 기성대가 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을 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검사 기간

▪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본문).

-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위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위의 검사 기간을 계산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5항).

대가의 지급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 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

기성대가의 지급

▪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3항).

▪ 대가 지급 시에는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본문).

▹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단서).

대가 지급 지연 이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 동일한 계약에서 위에 따른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4.2.2.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정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의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을 조정하며,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제2항·제4항).

1. 입찰일[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은 제외함)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

> ①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위 ①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그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
>
> ② 등락폭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 등락률
>
> ※ 계약단가: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
> ③ 등락률 = (물가변동 당시가격-입찰 당시가격)÷ 입찰당시 가격
>
> ※ 물가변동당시가격: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 ※ 입찰당시가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위 ①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그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2. 입찰일[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은 제외함)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①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
>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임금·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의

> 평균지수
>
> ④ 그 밖에 위의 ①부터 ③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지수

▪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5항).

조정 방법

▪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5항 본문).

▹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되,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5항 본문).

▪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6항).

▪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7항).

> ※ 그 밖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정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본문).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단서).

조정 방법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그 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

▪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

>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함)로 함(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함)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함)
>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함
>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위의 1. 및 2.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함)
>
>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따라 산출하되, 각각 100분의 8 및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및 제72조제8항).

계약금액 조정의 예외

▪ 입찰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함)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정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1항).

▪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본문).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단서).

조정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및 제72조제8항).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따라 산출하되, 각각 100분의 8 및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3항, 제74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정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제1항).

▹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조정 방법

▪ 계약기간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및 제74조제1항 본문).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단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및 제72조제8항).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따라 산출하되, 각각 100분의 8 및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제2항, 제74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4.2.3. 하자보수

하자 검사

정기 검사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

▹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하자보수 이행절차

하자 발생 시 보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하자보수 이행 통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제1항).

하자보수 금액 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3제1항).

▪ 위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참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3제2항).

하자보수 불이행 시 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위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본문).

▪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단서).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4.3.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4.3.1. 계약의 이행지체

계약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 납부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지연배상금 납부금액

▪ 계약상대자(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호).

▹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 X 지연배상금률(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 X

지체일수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야 하며,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2항).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4.3.2.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 2.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해야 하고, 위 1., 3. 및 4.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2).

-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통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5. 이의신청

5.1. 이의신청 제기

5.1.1.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③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과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이의신청 기간

▪ 이의신청은 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결과통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재심청구

이의신청의 결과에 대한 재심청구

▪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 위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는 계약분쟁조정 청구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제3절 1. 가.).

> ※ 그 밖에 이의 신청 및 재심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제3절 조정의 청구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